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9. 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7월 13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: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8. 3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이영환)

가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시행 '19. 6. 12.)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 정비 (안 제6조)
- 위탁기간 변경 (안 제10조제3항)
- 위탁 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

를 준용하도록 개정 (안 제10조제5항)

○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○ 본 안건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시행 '19. 6. 12.)으로 건강 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6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, 제5항에서는 위탁운영 시 준용이 되는 근거 조례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과 위탁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7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7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'19.6.11.개정)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 정비(안 제6조)
- 나. 위탁기간 변경(안 제10조제3항)
- 다. 위탁 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개정(안 제10조제5항)
- 라.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1. 6. 10. ~ 6. 30. 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센터는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”을 “센터에는 센터장과”로,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운영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른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3년 이내로”를 “5년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<u>다음과 같다.</u> 1. ~ 6. (생략) ② (생략)	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 <u>다음 각 호와</u> ----- ----- 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조직) ① <u>센터는 센터장, 가 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 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.</u> ②·③ (생략)	제5조(조직) ① <u>센터에는 센터장 과 ----- ----- ----- 둔다.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<u>센터의 사 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.</u> ② <u>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③ <u>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센터 운 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</u> ④ (생략)	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「 <u>사회복 지사업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 다)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<u>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 다)를 둔다.</u> ② <u>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.</u> <u><삭 제></u>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운영 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2. 건강가정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
3.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(운영) ①·② (생략)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10조(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5년으로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-----

~.